

제29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포럼의 모든 것

다양해진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정책 뒤따라야



지난 6월 17~18일 개최된 OECD 장관회의에 이어, 19~20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제29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포럼(APPA: 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이 개최됐다. 이전까지 28번의 회의가 개최돼 왔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APPA 회의에서는 OECD와 APEC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을 가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APPA는 첫째날 일반에게도 공개되는 Broader Meeting과 둘째날 Closed Meeting으로 나뉘지게 되며 Closed Meeting의 경우, 회원국 커미셔너만이 참석해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박광진 센터장이 한국 커미셔너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했으며, 회의기간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를 위한 법제도 및 기술 등 분야별 대안 제시, 그리고 회원국 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Broader Meeting

첫째날 연사로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소개한 방통위 임차식 네트워크 정책관을 비롯해, OECD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을 설명한 마이클 도노휴 OECD 국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NHN, 안철수연구소, MS 등의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 사례 및 기술동향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의 강연 가운데, 국내 개인정보 침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한 박 센터장의 '개인정보 고충처리 사례'는 국외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강연에서 박 센터장은 국내 개인정보 침해의 원인을 악의적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DB 유출과 개인정보 보유기업 및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의 원인으로 잘못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관행, 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투자부족 및 전문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보완과 사업자 및 이용자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losed Meeting

회원기관 커미셔너만 참석하는 둘째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개인정보 인식주간 행사 공동개최 등 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 협력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했고, 토론 결과를 토대로 제 29차 APPA 포럼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의 이메일 주소 자동분류 방법이나 항공사 탑승객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인정보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자리에 모인 회원국들은 국내에서 보급되고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i-PIN)의 운영체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뉴질랜드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뤄졌으며, 이는 향후 국내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제도(SIS)가 Security로 통칭되는 정보보호 분야뿐만 아니라 Privacy와 개인 정보보호 분야까지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개인정보보호 현황 주요 발표 내용

국내의 IT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IT와 전통 산업, 이질적인 정보통신기와 서비스들이 서로 결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으로 위치정보를 비롯해 영상 및 바이오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가 새롭게 생성·통합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의 정보공유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각 IT 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보급하고 있다.

○ 개인위치정보 보호현황

국내 위치기반 서비스 시장은 2007년부터 연평균 28%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인 약 200만명이 친구찾기, 자녀의 학교·학원 출결확인 등 다양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위치정보의 이용확대는 불법위치정보 추적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현황

국내에서도 범죄예방이나 사유재산 보호 등을 위해 CCTV가 공공, 민간 부문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범죄자 이외에도 일반 개인의 영상이 촬영돼 사생활 침해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영상정보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공·민간부문의 이용 시 CCTV 안내판 설치를 권고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기준을 뒀으며, 2007년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을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확대해 개정, 보완했다. 현재 공공부문의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는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돼 법률로써 규율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 RFID와 관련된 개인정보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RFID 산업활성화는 정부주도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추적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국내외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스파이 칩으로 명명하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2007년 일부 개정됐다. 이번 OECD 장관회의에서 정책권고문(Policy Framework)으로 채택된 'OECD RFID 정책원칙' 중 보호 관련 내용은 이미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모두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 바이오정보 보호 현황

꾸준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사람의 신체정보를 활용한다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바이오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시 사전고지 및 동의 등의 내용을 담아 2005년부터 별도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적용은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OECD RFID 정책원칙'에서 볼 수 있듯, 국내에서 제정된 각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APPA 회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향후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될 개인위치정보, 영상정보, 바이오정보 등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은 필수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술적 보호방안 마련 및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과 새로운 신규 IT 서비스 상에서 이뤄질 수 있는 침해위험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 각 국가별로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제정된 각종 가이드라인은 타 국가에게도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

